

의안 번호	제2351호 ~ 제2364호
----------	-----------------

2023. 3. 27.(월) 10:00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14건(조례안12, 동의안 2)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1호
- 제출일자 : 2023. 3. 9.
- 제 출 자 : 최미화의원(보건정책과)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육비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첫째아 1,200천원 → 4,000천원
 - 둘째아 2,500천원 → 6,000천원
 - 셋째아 4,200천원 → 8,000천원
 - 넷째아 부터는 10,000천원
 - 지급기준
 - 첫째아 1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둘째아 2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셋째아 3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 넷째아부터 4년간 → 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후 분기별 500천원 분할지급

4. 법적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2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설치(안 제20조)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 장성군청소년위원회의 겸임 가능
- 구성 및 임기(안 제21조)
 - 15~20명 이내의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
 - 위원장 선출 방법
 - 임기
- 기능(안 제22조)
 -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 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회의(안 제23조)

- 회의의 소집
- 개회 및 의결 정족수의 규정

○ 준용(안 제24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정의 준용

○ 재정 및 실무지원(안 제25조)

- 수당과 여비 지원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확대)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3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 (안 제14조제4항)
- 위원회 회의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범위 구체적으로 열거(안 제17조)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4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참여자격 개정(안 제2조)
(현행) 법관→(개정) 판사·검사·변호사

4.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인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5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증원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 수 조정 : 684명 → 685명(1명 증)

- 집행기관 : (현행) 669명 → (개정) 668명
- 의 회 : (현행) 15명 → (개정) 17명

※ 직종·직급별 정원 증원내역

구분	계	일 반 직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당초	684	648	4	1	34	609	1	2	3	30
변경	685	649	4	1	34	610	1	2	3	30
증감	+1	+1	-	-	-	+1	-	-	-	-

* '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정책지원관) 증원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6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충무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참고조례를 참조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외국민 규정, 외국인 연령 규정 삭제(제3조, 제9조, 제10조)
 -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 규정 사항이 없기에 삭제, 외국인 연령은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기에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제4조)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관련 규정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제8조, 제10조)
 -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명부 관련 내용 추가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추가 신설(제8조 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 중복 내용 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각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등

4. 법적근거

- 「주민투표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참조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7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최근 개정(2022. 7. 12.)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 3(민원실의 운영)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민원실이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

○ 민원실의 설치 등(안 제4조)

-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음.

○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 민원실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함.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안 제6조)

-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대기공간 마련 등

4.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8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함
-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 보험가입(안 제3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군민

○ 보험회사 선정(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정

○ 보험료 납부(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

○ 보장기준(안 제6조)

-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보험회사와 별도 지정

○ 보험금 청구(안 제7조)

- 피보호자인 장애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 사고일 현재 타시군 전출자, 허위 보험금 청구자,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제한하는 경우

4.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59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개정)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통합 및 폐지(안 제3장, 부칙 제2조)
 - 상기 조례를 개정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신설 후 공포·시행 시 폐지
- 비용의 보조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4장 제23조~제24조)
 -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근거 조문 신설

4.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60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건소 이전 신축
 - 1987년 보건소가 건축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회의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늘어나는 보건 수요에 대처가 어려워 이전 신축하고자 함
 - 당초 장성읍 영천리 1487-1 외 5필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지가상승 기대로 보상 불협의를
 - 이에 장성읍 기산리 477-1 외 7필지로 보건소 신축 부지를 이전코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계		8필지 / 동	9,712	4,204,960	
취득	토지매입	8필지		3,204,960	
	건물신축				
	기 타	하우스 및 포도나무 등		1,000,000	

5.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지를 영천리 1487-1번지의 5필지에서 기산리 477-1번지의 7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61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개정)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안 제2조 (현행)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개정)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관련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6호
 -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

4. 법적근거

-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62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맞게 과태료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별표)
 - (현행)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 제34조

4. 법적근거

-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63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군민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이에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확대(안 제1조)
 - (현행)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적용
 - (개정)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종류 확대
- 접종종류 조항(안 제2조)
 -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규정 마련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현행)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적용
- (개정)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4. 법적근거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4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64호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서 탈피하고, 소독형태를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방역소독 민간위탁
- 추진필요성
 - 감염 취약지역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사전 예방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감소
- 위탁기간 : 2023. 4월~
 - ※ '23년 시범기간 : 2023. 4. ~ 10.
- 대상지역 : 장성군 전지역(11개 읍면)
 - ※ '23년 시범운영 : 삼계면 전지역

구 분	방역방법	지 역
1권역	연막, 분무	사창1~13리
2권역		월연1~2리, 주산1~2리, 상도1~2리, 능성1~2리
3권역		발산1~2리, 수옥1~2리
4권역		덕산리, 수산1~2리, 죽림리, 생촌1~2리
5권역		부성1~2리, 화산1~2리, 신기리, 내계1~2리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서 탈피하고, 소독형태를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365호
----------	--------

2023. 3. 24.(금) 14:00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 안전 : 1건(조례안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65호
- 제 출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실장)
- 제출일자 : 2023. 3. 16.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장성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음식특화거리 지정 등(안 제5조)
 -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 지정요건 충족 확인
- 음식특화거리 지정절차(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서 교부, 지정내용 공고, 관리대장 작성
-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안 제8조)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등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성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 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366호
----------	--------

2023. 3. 28.(화) 10:00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3. 3. 24.

II.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1. 편성개요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652억 9천 8백 만원으로 기정액 5,272억 4천 6백만원 보다 380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됨
- 그 중 일반회계는 5,561억 6천 3백만원으로 378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1억 3천 5백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 되었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65,298	527,246	38,052	7.22	
일 반 회 계		556,163	518,311	37,852	7.30	
특 별 회 계		9,135	8,935	200	2.24	
	의료급여사업	797	797	0	0	
	공공실버주택	1,242	1,242	0	0	
	건축진흥	505	505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170	170	0	0	
	주차장 운영	248	248	0	0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90	90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15	15	0	0	
	드림빌	935	735	200	27.21	
	주민소득지원 기금	413	413	0	0	
	상수도사업	4,720	4,720	0	0	

1 일반회계

-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5,183억 1천만원보다 378억 5천 2백만원이 증액(7.30%)된 5,561억 6천 3백만원임.

○ 세입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2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국
비보조금은 74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6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556,163	100	518,310	37,852	7.30	
지 방 세	42,627	7.66	42,627	0	0	
세 외 수 입	14,127	2.54	14,305	△177	△1.24	
경 상 적 세 외 수 입	6,610	1.19	6,610		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866	1.23	6,855	11	0.17	
지방행정체제 · 부과금	650	0.12	839	△189	△22.53	
지 방 교 부 세	281,189	46.68	269,897	11,291	4.18	
조정교부금 등	8,500	1.53	8,000	500		
보 조 금	177,413	33.25	166,239	11,173	6.72	
국 고 보 조 금 등	132,770	24.78	125,294	7,476	5.97	
시 · 도비보조금 등	44,643	8.48	40,945	3,697	9.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307	6.66	17,242	15,065	87.37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은

- 먼저, 자체사업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개보수 5억 8천만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주민편익사업(22건) 8억 9천 5백만원, 제1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11억 5천만원, 황룡행복마을 한식관문 건립사업 10억원, 삼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부지매입) 11억원,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 19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3억 1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8억 8백만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지원 7억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9억 5천만원, 저수지 개보수사업 14억, 유희산림의 자산화사업 8억 5천만원, 도시가스 공급 11억 9천 5백만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9억 9천 8백만원 등이 계상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액	증감율
계	556,163	100	518,310	37,852	7.30
인 건 비(100)	61,767	11.11	61,039	727	1.19
물 건 비(200)	34,055	6.12	32,498	1,557	4.79
경 상 이 전(300)	213,471	38.38	203,456	10,014	4.92
자 본 지 출(400)	239,860	43.13	214,840	25,021	11.65
내 부 거 래(700)	1,582	0.28	1,452	130	8.93
예비비및기타(800)	5,428	0.98	5,025	403	8.02

②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9억 3천 5백만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91억 3천 5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에서 2억원이 증액 되었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9,135	100	8,935	200	2.24	
세 외 수 입		4,269	46.37	4,269	0	0	
	경상적 세외수입	3,626	39.69	3,626	0	0	
	임시적 세외수입	427	3.29	427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6	2.36	216	0	0	
보 조 금		146	1.61	146	0	0	
	국 고 보 조 금 등	123	1.35	123	0	0	
	시·도비보조금 등	23	0.26	2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20	51.66	4,520	200	4.42	
	보전수입등	4,010	43.89	3,810	200	5.25	
	내부거래	710	7.77	710	0		

○ 세출예산은 자본지출로 2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사업으로는 드림빌특별회계 2억원이 증액 편성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액	증감율
계	9,135	100	8,935	200	2.24
인 건 비(100)	266	2.92	266	0	0
물 건 비(200)	3,405	37.27	3,405	0	0
경 상 이 전(300)	835	9.15	835	0	0
자 본 지 출(400)	2,262	24.76	2,062	200	9.70
융자및출자(500)	400	4.38	400	0	0
내 부 거 래(700)	467	5.12	467	0	0
예비비및기타(800)	1,500	16.40	1,500	0	0

III.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회추경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5,298	100	527,246	100	38,059	7.22
일 반 공 공 행 정	21,153	3.74	19,688	3.73	1,465	7.44
공공질서및안전	21,344	3.78	18,882	3.58	2,462	13.04
교 육	4,206	0.74	4,206	0.80	0	0
문 화 및 관 광	33,414	5.91	30,143	5.77	3,271	10.85
환 경	44,107	7.80	43,636	8.47	471	1.08
사 회 복 지	122,640	21.69	114,387	21.69	8,253	7.21
보 건	14,131	2.50	14,082	2.67	49	0.35
농 립 해 양 수 산	111,158	19.66	103,871	19.74	7,287	7.02
산 업 · 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22,159	3.92	18,848	3.57	3,311	17.57
교 통 및 물 류	32,957	5.83	27,844	5.28	5,113	18.36
국토및지역개발	64,474	11.41	58,096	11.02	6,378	10.98
예 비 비	4,920	0.87	5,020	0.66	△100	△1.99
기 타	68,635	12.15	68,543	13.00	92	0.13

□ 재원별 현황

○ 자체사업 : 184억원(48%)

○ 보조사업 : 197억원(52%) ◆국비98, 도비42, 군비57

□ 부서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1회추경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5,298	100	527,246	100	38,052	7.22
기	획 실	7,561	1.34	7,512	1.42	49	0.64
일	자 리 경 제 실	15,745	2.79	14,185	2.69	1,560	11
자	치 소 계	236,011	41.75	223,722	42.43	12,289	5.49
행정국	총 무 과	68,649	12.14	68,527	13	122	0.18
	민 원 봉 사 과	2,680	0.47	2,575	0.49	105	4.07
	문 화 관 광 과	21,022	3.72	18,251	3.46	2,771	15.19
	주 민 복 지 과	34,147	6.04	32,734	6.21	1,413	4.31
	가 족 행 복 과	89,915	15.91	83,042	15.75	6,873	8.28
	환 경 과	15,808	2.8	15,494	2.94	314	2.03
	세 무 회 계 과	3,790	0.67	3,099	0.59	691	22.31
건 설	소 계	216,754	38.34	197,027	37.37	19,727	10.01
산업국	재 난 안 전 과	32,340	5.72	28,492	5.4	3,848	13.51
	건 설 과	62,028	10.97	53,493	10.15	8,535	15.96
	도 시 재 생 과	10,664	1.89	8,077	1.53	2,587	32.02
	산 림 편 백 과	24,885	4.4	22,774	4.32	2,111	9.27
	교 통 에 너 지 과	21,853	3.87	19,908	3.78	1,945	9.77
	농 업 축 산 과	50,437	8.92	49,819	9.45	618	1.24
	농 업 유 통 과	14,547	2.57	14,464	2.74	83	0.58
보건소	소 계	14,879	2.63	14,895	2.82	△16	△0.11
	보 건 정 책 과	9,655	1.71	9,621	1.82	34	0.35
	건 강 증 진 과	5,224	0.92	5,274	1	△50	△0.94
농업기술센터	소 계	7,855	1.39	7,097	1.35	558	7.65
	농 업 지 원 과	4,102	0.73	3,679	0.7	423	11.52
	농 업 기 술 과	3,753	0.66	3,418	0.65	335	9.82
체 육 사 업 소		4,904	0.87	4,405	0.84	499	11.34
맑은물관리사업소		49,979	8.84	47,833	9.07	2,146	4.49
평생교육센터		5,361	0.95	5,361	1.02	0	0
의회사무과		931	0.16	920	0.17	11	1.19
읍	면	5,318	0.94	4,289	0.81	1,029	24.02

□ 부서별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합 계			25,915	
기획실	자체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50	신규
	자체	국도비 확보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80	신규
일자리경제실	보조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지류형 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1,310	기존
	보조	전남 청년 마을로플러스사업	251	신규
	보조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	132	신규
	자체	헬스케어로봇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50	신규
총무과	자체	이장 역량강화교육(국내 선진지 견학)	73	기존
민원봉사과	보조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31	신규
문화관광과	보조	백양사 대웅전 주변 청고당 개축	500	신규
	보조	입암산성 진현지 1차 발굴조사	300	신규
	보조	백양사 천진암 한식문화교육관 증축 설계용역	100	신규
	자체	백양사 입구 명품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80	신규
	자체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200	기존
주민복지과	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101	기존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808	기존
가족행복과	보조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지원	700	신규
	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103	신규
	자체	추모공원 개보수	151	신규
환경과	보조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370	신규
세무회계과	자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개보수	580	기존
재난안전과	자체	예비군지역대 통합사무실 설치사업	204	신규
	보조	구남촌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특별교부세)	400	신규
	보조	우무실교 소교량 재가설사업(특별교부세)	400	신규
	자체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	500	기존
	자체	삼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38	기존
	자체	장성읍 가작소하천 하천제방정비사업	300	신규
건설과	보조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	300	신규
	보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950	신규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건설과	보조	저수지 개보수사업	1,400	신규
	보조	지역개발사업(도지원)	500	기존
	자체	주민편익사업(22건)	895	기존
	자체	남면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300	신규
	자체	제1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1,150	신규
	자체	신규마을(10개소) 마을만들기 사업	500	기존
도시재생과	보조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500	신규
	자체	황룡행복마을 한식관문 건립사업	1,000	신규
	자체	2023년 역전로 지중화사업	453	신규
산림편백과	보조	유휴산림의 자산화사업	850	신규
	자체	성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00	신규
	자체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400	신규
교통에너지과	보조	도시가스 공급	1,195	신규
	보조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540	신규
	자체	삼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부지매입)	1,100	신규
농업축산과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344	신규
	보조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998	신규
	보조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14	기존
	자체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230	신규
	자체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연구용역	60	신규
농업유통과	보조	농식품바우처 지원	186	기존
	자체	장성군 온라인쇼핑몰 이벤트 프로모션	200	기존
	자체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	200	신규
보건정책과	보조	국가예방 접종사업(성인 예방접종)	378	기존
농촌지원과	자체	가을축제 조경 조성	200	신규
농업기술과	군비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50	신규
체육사업소	보조	조정경기장 개보수	170	신규
	보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40	신규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	1,900	신규

IV.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기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에서 380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증액 또는 조정되었고, 일부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제위기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분야에 대한 민생안전대책 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함.

의안 번호	제2367호
----------	--------

2023. 3. 28.(화) 10:00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3. 3.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의거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설치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재 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 용 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지원대상 : 장성군 관내 군민

4. 기금운용계획

1 운영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000,000	-	2,000,000	합 계	2,000,000	-	2,000,000
전입금	-	-	-	비용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용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	-	-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구 물건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	-	-	예치금	2,000,000	-	2,000,000
예수금	-	-	-	차입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	-	-	예수금원 리금상환	-	-	-
기타수입	2,000,000	-	2,000,000	기타지출	-	-	-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수입합계	2,000,000	-	2,000,000	
200 세외수입	2,000,000	-	2,00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000,000	-	2,000,000	
224 기타수입	2,000,000	-	2,000,000	
224-03 기부금수입	2,000,000	-	2,000,000	○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지출합계		2,000,000	-	2,000,000
총무과		2,000,000	-	2,000,000
	일반행정	2,000,000	-	2,000,000
	재무활동(총무과/고향사랑기금)	2,000,000	-	2,000,000
	보전지출(장성군 고향사랑기금)	2,000,000	-	2,000,000
	예치금	2,000,000	-	2,000,000
	602 예치금	2,000,000	-	2,000,000
	01 일반예치금	2,000,000	-	2,000,000
	○예치금 2,000,000,000원			

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① 조성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3년도	2,000,000	-	-	-	-	-	-	2,000,000
계	2,000,000	-	-	-	-	-	-	2,000,000

② 집행액

(단위 : 천원)

[illegible]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	2023년도말 현재액 ㉢	증감(㉢-㉠)	
예치금	광주은행	-	-	2,000,000	2,000,000	

5. 법적(제정)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6. 검토의견

-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의거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7. 첨부서류 : 생략